

주택공사 품질관리 협약서

- 사업명 :
- 위치 :
- 사업기간 :
- 공사계약금액 :

상기 사업에 대하여 건축주 000, 시공사 △△△, 보증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장 ***은 주택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본 협약과 같이 각자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증거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건축주, 시공사, 보증사가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제1조 (총칙)

건축주·시공사·보증사는 협약 체결후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2조 (건축주 의무)

- ① 건축주는 현장검사를 위하여 건축허가시의 설계 관련 도서(설계도, 시방서 등)를 보증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중 공사 관련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증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건축주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자 또는 시공사에게 특별히 요구한 사항(특이하게 적용되는 마감자재 및 설치제품 등)에 대해서는 보증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 및 통지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증사 의무)

- ① 보증사는 현장검사원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공사에게 통지합니다.

구분	현장검사 시기	주요 현장검사 내용
1차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2차	지붕층 철근 배근 완료시	
3차	사용승인예정일 기준 D-1~5일 사이	
4차	:	
5차	:	

② 제1항 통지내용에 수정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보증사는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확인(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하고, 만약 위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치할 것을 시공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장검사 결과나 수정보완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시공자가 제4조 제3항에 따른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사는 잔여 현장검사를 중단하고 보증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시공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정이 어렵다고 보증사가 판단한 경우
2. 제2항과 같이 시공자에게 동일 건으로 3회이상 통지한 수정보완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보증사는 그 거절사유를 명시하여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시공자 의무)

① 시공자는 건축주로부터 제2조 제3항에 따른 대행을 요구 받은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자는 보증사에게 제3조에서 정한 현장검사시기 7영업일 이전까지 현장검사일자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시공자는 보증사의 현장검사원이 현장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현장검사원의 현장검사시 현장안내
2. 현장검사에 필요한 현장검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④ 시공자는 보증사의 현장검사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공사전/후 사진 등)를 건축주와 보증사에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현장검사 수수료 납부)

시공자는 본 약정체결과 동시 보증사에 현장검사 수수료 전액을 아래와 같이 현금(동일어음교환소 지역의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카드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장검사 수수료	일금	원(W	---)
----------	----	-----	------

제6조 (현장검사 수수료 반환)

① 보증사는 제3조 제4항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 제3조 제1항의 미실시한 현장검사 수수료(이자제외)를 시공자 아래의 계좌로 반환합니다.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	예금주	
-----------------	--	-----	--

※ 상기의 현장검사 수수료 반환을 위한 계좌는 시공자 법인명의 통장(예금주는 시공자 명)으로 하며, 약정체결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제7조 (현장검사원)

- ① 보증사로부터 현장검사 업무를 위임받은 현장검사원은 현장방문시 보증사의 현장 검사원임을 나타내는 증표(신분증 등)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② 현장검사원은 현장검사를 함에 있어 시공자의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합니다.
- ③ 현장검사원의 현장검사는 시공자의 현장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 ④ 현장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현장검사 합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2. 시공자가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한 마감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하는지 여부
 3. 제2조 제2항과 같이 건축주(또는 시공자)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이 있는 경우 주택 건축에 특이하게 적용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의 시공상태
 4. 그 밖에 현장검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보증서 발급)

- ①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증사에 보증발급 요청을 합니다.
- ② 보증사는 제1항과 같이 보증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시공자”를 주채무자로 하고 “주택(건물부분) 소유자”를 채권자로 하여 품질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제9조 (보증료)

- ① 시공자는 제8조 제2항의 품질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보증사에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증료는 현금(동일어음교환소 지역의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 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책임부담)

본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원인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협약외 사항)

- ① 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관계법령 및 일반 민사법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② 본 협약서 내용의 보완 또는 추가협약이 필요한 경우 특약으로 명시하여 추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보증사의 품질보증 발급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건축주 0 0 0 (인)

시공사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장 *** (인)